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106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920,000,000원(이후 1,876,000,000원으로 감축됨), 보증기간 2015. 9. 15.부터 2016. 9. 13.(이후 2020. 2. 28.까지로 연장됨)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D의 대표자인 B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2,4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7. 2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1. 24.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930,067,7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D과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전2336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963,792,069원 및 그 중 1,930,067,755원에 대한 2020. 1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21. 3. 18.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2020. 3.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9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은 채무 초과 상태였다.

사. 피고는 2020.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70,000,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1,963,792,069원 중 낮은 금액인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2016. 3. 20. B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구상금채권도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채무 초과 상태나 사해의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대물변제 예약에 기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물변제예약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8230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9257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0.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B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H 주상복합건물(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21,857,420원, 공사기간을 2016. 3. 25.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기성금 50,000,000원은 2016. 6. 3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와 같이 공사 중인 H 아파트 건물 1세대를 대물변제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0.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B으로부터 2016. 8. 9.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51,634,500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잔금이 70,222,9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1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I은행 앞으로 신탁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2020. 3. 15. B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3.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매매대금조로 B의 J조합에 대한 대출금 109,264,8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69,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2016. 3. 20.자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마쳐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2015. 9. 15.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된 2016. 3. 20.경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B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99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969.3㎡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69.3분의 25.0253 끝.

